

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21-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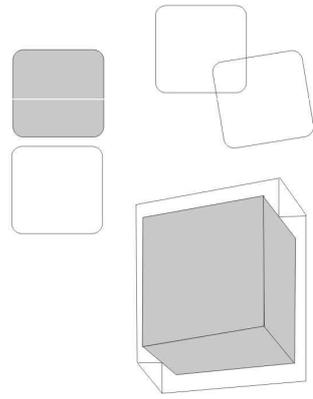
가진 것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2022학년도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법인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이면 간지

2022학년도 법인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주요 변경 내용

쪽수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비고
5	2) 법정부담경비 전액을 전출할 수 없는 경우 -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비용 중 제세공과금과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은 법정부담경비로 전출하여야 함	2) 법정부담경비 전액을 전출할 수 없는 경우 -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비용 중 제세공과금과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은 법정부담경비로 전출하여야 함 -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은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회계연도 종료 전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여야 함 4) 다만, 법정부담금과 학교운영경비 의무전출액을 전액 부담한 법인은 당해연도 법인회계 결산 시 수익재산 총 수입액 산정 시 전년도 잉여금, 물품매각수입, 예금이자, 잡수입 미반영	내용 추가
6	5. 법인회계의 전출 및 법인운영비 집행 <항목설명> 1) 수익재산 총 수입액(a) : 세입예산과목(항) 중 ① 기본재산수입(재산매각수입은 제외), ② 사업수입, ③ 투자수입, ④ 전년도수입 2) 제세공과금(b) :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 단, 수익용기본재산 매각수입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제외 3) 운영비용 4) 수익비용 : 세출예산과목 (관)재산조성비 (항)재산관리비 (목)재산유지비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선비	5. 법인회계의 전출 및 법인운영비 집행 <항목설명> 1) 수익재산 총 수입액(a) : 세입예산과목(항) 중 ① 기본재산수입(재산매각수입은 제외), ② 사업수입, ③ 투자수입, ④ 전년도수입 ⑤ 전년도잉여금(이월사업비 제외, 기부목적에 따른 이월금 제외) ⑥ 물품매각수입, 예금이자, 잡수입 2) 제세공과금(b) : 세출예산과목(항) 중 공과보험료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중 수익재산 총 수입액(A)으로 납부한 금액 * 단, 기본재산 처분(매각) 후 매각수입 및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제외 *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지 않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자동차세, 재산대부료, 교육용기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등은 제세공과금이 아니라 운영비용에 해당 3) 운영비용 : 세출예산과목(관) 중 ① 이사회비, ② 사무비, ③ 잡지출 운영비용 한도 내에서 수익재산 총 수입액 (A)으로 지출한 금액(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 제외) - 법정부담경비 전액 전출할 수 있는 경우: 제세공과금 공제 후 40% 미만 - 법정부담경비 전액 미전출한 경우 : 제세공과금 공제 후 20% 미만 4) 수익비용: 세출예산과목(관) 중 재산유지비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선비(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한도액: 해당 건물 수입의 20%미만 - 수익비용 승인 불가의 경우 운영비용 지출로 간주	내용 변경
8	라. 수익용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2)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법인세 원청징수분에 대하여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은 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것은 교비회계로 즉시 전출	라. 수익용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2)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청징수분에 대하여 반드시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환급받은 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것은 교비회계로 즉시 전출	내용 추가

쪽수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비고
13	○ 임대보증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며, 가능한 한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되 이자수입 발생시 관(재산수입)기본재산수입 목)대가료에 편성하도록 할 것.	○ 임대보증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며, 가능한 한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되 이자수입 발생시 관(재산수입)기본재산수입 목)대지로 또는 목)대가료에 편성하도록 할 것.	내용 추가
14	○ 수익용기본재산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입은 대가료, 기타수입에는 법인세 환급금 (법인분만 해당)등을 계상	○ 수익용기본재산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입은 대지로 및 대가료, 기타수입에는 법인세환급금 (법인분만 해당)등을 계상	내용 추가
17	【별지 제1호】 법인 세입·세출 예산과목별 편성기준 (세출) 9. 잡지출 ○ 각종 상품대.사례금.소송비 및 기타 제지출금을 계상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	【별지 제1호】 법인 세입·세출 예산과목별 편성기준 (세출) 9. 잡지출 ○ 각종 상품대, 사례금, 소송비, 기타 제지출금을 계상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 ○ 공과금, 수수료를 제외한 법인연합회비 등 운영비는 법정부담금을 우선 전출한 후 운영비 한도 내에서 집행 할 것	내용 추가
40	[서식11] 기부금 각서 본인은 학교법인 ○○학원에 아래 표시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하겠음을 각서합니다.	[서식11] 기부금 각서 본인은 학교법인 ○○학원에 아래 표시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하겠음을 각서합니다. (기부금 목적 달성 후 잔액은 법정부담금으로 납부) (예시) 기부목적 반드시 명시 - 공과금: 금1,500,000원 - 장학금: 금1,000,000원 - 법인연합회비: 금500,000원	내용 추가

● ● 목 차 ● ●

I. 일반사항	1
II. 예산편성 및 집행원칙	6
III. 예산편성 절차	10
IV. 결산 절차	11
V. 기타 행정사항	13
[별지 제1호] 법인 세입·세출 예산과목별 편성기준	14
[별지 제2호] 법인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설	18
[별지 제3호] 법인회계 예·결산 관련 각종 서식	25
VI. 수익사업회계	60
VII. 예·결산 검토지적사항	62

이면 간지

I 일반사항

1. 회계의 의의

- 1) “회계”란 국가·기업·학교 등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변동 상황을 일정 방식에 따라 화폐단위로 기록·분류·계산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 및 정보제공을 하는 과정 및 제도를 말함
- 2) 회계행위는 그 성격상 전형적이고 요식적인 것이 많으며, 회계행위의 시기·서식·내용 등은 모두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업무 담당자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 보통임
- 3) 따라서 회계사무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함

2. 관계규정 및 중요내용 발취

가. 관계규정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 기타 예산 관계 제 규정 및 지침 등

나. 중요내용 발취

1) 법인회계의 구조(「사립학교법 제29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사립학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2) 학교법인의 회계연도(「사립학교법 제30조」)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를 따른다.

- 3)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학교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
학교법인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집중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 자금의 관리(「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
학교법인은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야 한다.
- 6) 차입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차입은 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 7) 출납폐쇄기간(「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
법인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8) 예산총계주의 원칙(「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 (학교운영경비의 부담)**

- ①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수익의 범위 등)**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1. **제세공과금**

-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등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가. 세부 내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1) 이사회의 회의비 및 직원 인건비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운영비용” 이라 한다)
- 2)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수익비용” 이라 한다)

나. 범위 :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

- 1) 운영비용 : 교육감이 실제 학교법인의 운영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2) 수익비용 : 교육감이 실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3. **법정부담경비**

■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인정 범위

1) 운영비용 :

- 법정부담경비 전액을 전출할 수 있는 경우
⇒ 제세공과금 공제 후 남는 금액의 40%미만
- 법정부담경비 전액을 전출할 수 없는 경우
⇒ 제세공과금 공제 후 남는 금액의 20%미만

2) 수익비용 :

- 해당 건물 수입의 20%미만
- 이전연도 의무전출액을 전액 전출한 법인으로,
- 수익을 위한 건물수선비로 관할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단, 법인회계 결산 완료 이전(3~5월) 사용 전에 대해서는 결산 결과, 의무전출액을 전액 전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익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수익비용 사용 승인 신청서 [서식29])

* 세출예산과목

· 운영비용 : (관) 이사회비, 사무비, 잡지출 · 수익비용 : (목) 재산유지비

※ [별지 제2호] 법인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설 참고

3. 예산·결산의 공개

-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4. 수입의 증대

- 수익성이 낮은 수익용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입을 증대
- 수익사업의 경비 절감으로 수익성을 제고

5. 법인회계의 전출 및 법인운영비 집행

1) 법정부담경비 전액을 전출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소속학교에 학교운영비로 전출하여야 함

- 학교운영비 공제순서 예시 -

(단위 : 천원)

수익재산 총 수입액 (A)	제세공과금 (세금, 보험료) (B)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C)		법정 부담경비 전출액 (D)	학교운영비		
		운영비용 (한도내실제경비)	수익비용		의무전출액 (E=A-B-C-D)×80%이상	실제 전출액 (F)	전출 부족액 (H-E-F)
400,000	10,000	60,000	5,000	200,000	100,000	80,000	20,000

※ 운영비용 편성한도: (A-B)×40% 미만 ⇒ (400,000-10,000)×40%=156,000

2) 법정부담경비 전액을 전출할 수 없는 경우

-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비용 중 제세공과금과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은 법정부담경비로 전출하여야 함
-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은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회계연도 종료 전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여야 함

- 법정부담금경비 공제순서 예시 -

(단위 : 천원)

수익재산 총 수입액 (A)	제세공과금 (세금, 보험료) (B)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C)		법정부담경비		
		운영비용 (한도내 실제경비)	수익비용	의무전출액 (E=A-B-C)	실제 전출액(F)	전출부족액 (H-E-F)
200,000	5,000	15,000	1,000	179,000	155,000	24,000

※ 운영비용 편성한도: (A-B)×20% 미만 ⇒ (200,000-5,000)×20%=39,000

- 3) 위 1), 2)항에 의해 학교운영비 및 법정부담경비 의무전출액을 전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
- 4) 다만, 법정부담금과 학교운영경비 의무전출액을 전액 부담한 법인은 당해연도 법인회계 결산 시 수익재산 총 수입액 산정 시 전년도 잉여금, 물품매각수입, 예금이자, 잡수입 미반영

<항 목 설 명>

- 1) 수익재산 총 수입액(A) : 세입예산과목(항) 중 ① 기본재산수입(재산매각수입은 제외), ② 사업수입, ③ 투자수입, ④ 전년도수입, ⑤ 전년도잉여금(이월사업비 제외, 기부목적에 따른 이월금 제외) ⑥ 물품매각수입, 예금이자, 잡수입
- 2) 제세공과금(B) : 세출예산과목(항) 중 공과보험료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중 수익재산 총 수입액(A)으로 납부한 금액
※ 단, 기본재산 처분(매각) 후 매각수입 및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제외
※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지 않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자동차세, 재산대부료, 교육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등은 제세공과금이 아니라 운영비용에 해당
- 3) 운영비용 : 세출예산과목(관) 중 ① 이사회비, ② 사무비, ③ 잡지출
운영비용 한도 내에서 수익재산 총 수입액(A)으로 지출한 금액(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 제외)
 - 법정부담경비 전액 전출할 수 있는 경우: 제세공과금 공제 후 40% 미만
 - 법정부담경비 전액 미전출한 경우 : 제세공과금 공제 후 20% 미만
- 4) 수익비용: 세출예산과목(관) 중 재산유지비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선비(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한도액: 해당 건물 수입의 20%미만
 - 수익비용 승인 불가의 경우 운영비용 지출로 간주

6. 경상운영비 지출 절감

-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지출 절감
- 에너지 절감, 기타 경상적 경비의 절약

II 예산편성 및 집행원칙

1. 예산편성 기본원칙

가. 관계규정의 준수

- 1)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동 시행규칙」 등을 숙지하고 예산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1】 법인세입예산과목 및 【별표2】 법인세출예산과목을 숙지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학교법인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나. 예산의 정확한 계상

- 1) 가공의 수입 및 지출을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2) 수입 및 지출의 누락이나 축소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소요액을 정확하게 계상한다.
- 4)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세입

가. 예산총계주의 원칙

- 1)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함
- 2) 수입지출의 누락, 축소 등 가공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명기 (산출기초 순서 : 단가(원) × 인원(명) × 회수(회))

나.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 1) 법인의 모든 수입(재산매각대, 차입금, 임대료 등)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2)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은 제외
- 3) 임대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별도예금)으로 관리하되, 그 이자수입은 대가료로 편성
- 4) 수익용기본재산 중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편성

다. 발생 수입의 법정부담금 우선 부담

- 1) 경영학교의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은 법인에서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정부담금에 우선 편성

라. 수익용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 1) 수익이 낮은 수익용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제고하고 임대료, 예금이자, 투자수입, 법인세환급금 등 발생수입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징수 및 계상 철저
- 2)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반드시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환급받은 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것은 교비회계로 즉시 전출
- 3) 법인세환급금은 환급받은 법인세(학교분 포함) 모두 법인회계 세입 예산(기타수입-법인분, 잡수입-학교분)에 계상하고, 교비회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은 법인회계 세출예산(전출금)에 계상하여 해당 학교 회계로 즉시 전출할 것

마. 재산매각수입·차입금 등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것만 계상

3. 세출

가.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나. 이사장은 예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부득이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모든 수입·지출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2)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며,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함

다.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한 국·공유재산 임대료(도로점유사용료 포함) 등은 제세공과금이 아니므로 관(사무비향)수용비 목)수수료수선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마.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학교의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수익에 대하여는 가급적 수익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교육시설의 확충·학생 장학금·교원연구보조비 등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4.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집행기준 이행

- 가.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 공제 후 최소한의 이사회경비를 공제하는 등 소모성·경직성·선심성 경비는 억제하여야 한다.
- 나.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총수입에서 법인의 법정부담금 의무전출액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한 학교비로 전출할 수 없다.

(단,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출연할 경우는 시설비 등으로 집행 가능)

- 다.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공제비용 우선 순서에 따라 집행하되, 법정부담금을 최우선적으로 전출하고 학교법인운영 필요경비 집행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제한한다.

⇒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상한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총액-제세공과금)×20% 미만

- 라. 법정부담금 의무전출액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비목적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회계 종료 전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III 예산편성 절차

1. 관련 근거

-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예산편성요령)
-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편성절차)
- 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2. 편성절차

주체	일정	구분	주요내용
교육청	2000.12월	예산 및 결산 지침 수립·시달	○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기본지침 수립·시달
		↓	
이사장	2000.12.31. 회계연도 개시 2월 전	예산편성요령 결정 및 시달	○ 교육청 기본지침을 포함한 법인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요령 결정 및 시달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	
이사장	2000.1월말	법인회계 예산안 편성	○ 법인회계 예산안 편성
		↓	
학교법인	2000.2.18.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이사회 의결	○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제1항
		↓	
학교법인	2000.2.23. 회계연도개시 5일전	교육청 보고 및 예산 공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청에 법인회계 예산서 제출 *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제출 ○ 법인회계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속명세서 포함[별지3 참고])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3. 제출서류

- [별지 제3호] 법인회계 예·결산 관련 각종 서식 참고

IV 결산절차

1. 관련 근거

-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결산)
-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2. 결산절차

주체	일정	구분	주요내용
	매년 2월 말일	회계연도 종료	○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	
	20○○.3.20.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출납폐쇄정리	○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	
이사장 (감사)	20○○.4.9.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	○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수익사업회계 포함) ○ 「사립학교법」 제31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	
학교법인	20○○.4.24.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결산 심의 확정	○ 이사회 심의·의결(수익사업회계 포함)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제1항
		↓	
학교법인	20○○.5.31.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교육청 보고 및 결산 공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교육청에 법인회계 결산서 제출(수익사업회계 포함) ○ 법인회계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별지3 참고]와 감사보고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수익사업회계 포함) ○ 「사립학교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14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 가. 결산액은 도교육청에 제출한 최종 추경예산서의 세입·세출내역부와 일치하여야 하며 임의 수정 또는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나. 세입세출 결산서 부기란에는 집행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상세하게 기입하고 결산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결산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르며, 수익사업회계 결산서는 법인회계결산서 제출 시 첨부한다.
 -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은 법인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결산 잔액과 잔액증명서 금액이 다를 때에는 불부합조서(차액설명서)를 첨부한다.
- 다. 법인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 라. 임대료, 예금이자, 투자수입 등 회계연도에 수입되어야 할 각종 수입금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말(2월말) 이전에 징수하여야 한다.(출납폐쇄기 내에 수납완료)
- 마. 법정부담금 및 학교운영비 전출 등을 확대하여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바. 경영학교로 전출한 금액(법정부담금, 운영비, 시설비 등)은 학교별·전출 목적별(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운영비, 시설비 등)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 사.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한 법인이 이월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월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며, 특히 별도의 목적 없이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아. 세입 과목 중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적은 경우 및 세출 과목 중 결산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

자. 법인은 이사회에서 심의·확정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별지 제3호] 법인회계 예·결산 관련 각종 서식 참고

V 기타 행정사항

-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세입추계를 소홀히 함이 없이 면밀히 검토, 모든 세입원을 전액 포착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
 - 수입이 없으면서 과목존치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실제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가공 세입예산 편성 금지**
 - 예산은 천원단위로 편성하되 세입은 절사, 세출은 절상하며, 결산은 원단위로 편성하고, 계량단위는 미터법 적용
 - 회계 관계 규정 준용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등 회계 관계 제 규정을 준용한다.
- 건물 및 토지 임대료 책정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책정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으로 인한 임대료 변경 시 계약서 사본을 예산서 부속서류로 반드시 첨부)
 - 임대보증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가능한 한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되 이자수입 발생시 관)재산수입 항)기본재산수입 목)대지료 또는 목)대가료에 편성하도록 할 것.
 - ☞ 임대보증금은 당초 임대보증금 환급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음
 - ☞ 수익용기본재산(현금) 이자수입과 혼동 유의

법인 세입·세출 예산과목별 편성기준

○ 세 입

구 분	편 성 기 준
1. 재산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반드시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임대료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책정 ○ 수익실적이 없거나 수익성이 낮은 수익재산은 과감히 수익성이 높은 타 재산으로 대체 전환하거나 수익증대 방안강구 ○ 수익용기본재산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입은 대지료 및 대가료, 기타수입에는 법인세환급금(법인분만 해당)등을 계상 ○ 재산매각대는 감독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며, 대금은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경비로 사용불가 ○ 수익용기본재산의 대체는 처분가격과 매입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타 비목에 유용불가 ○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 그 처분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함(예산과-11211, 2015.11.4. 참고)
2. 사업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는 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경리 ○ 전년도 사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사업수익 전망을 수익사업체별로 “목” 을 설정하여 계상
3. 투자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의 원금과 이자 및 회사채나 기타투자에 대한 배당금 수입 등을 계상하되 당해연도 중 수입이 확실한 것만 계상

구 분	편 성 기 준
4. 전년도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을 해당과목에 계상
5. 이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을 가결산하여 이월예상액을 계상하고 결산 결과 확정된 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 전년도 사업중 연도내에 종료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정확한 재원을 파악하여 계상(명시, 사고이월액 조서 작성)
6. 기 부 원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의 기부금이나 국외원조금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계상 ○ 세출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실제 재원이 없음에도 이를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함
7. 차입금	<p>※ 관할청의 차입허가를 받은 금액에 한하여 계상하되,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명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일시)차입은 법인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확실한 상환 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장이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계상하고, 반드시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명시 ○ 일시차입은 차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안에 상환 ○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재원은 반드시 장기차입 허가 시 인정된 재원으로 상환
8. 잡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각항 이외의 수입으로 불용물품매각대, 법인운영비예금이자, 변상금, 위약금, 법인세환급금(학교분만 해당) 및 기타 수입 등을 계상 ○ 은행에 보관 중인 자금은 그 자금의 수급계획에 따라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 ○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세입예산에 편입한 후에 집행

○ 세 출

구 분	편 성 기 준
1. 이사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임원의 여비 및 일당 등 실비변상 경비 ○ 이사회 의사결정비 및 기타 급식경비와 경조비·접대비 등을 정당한 산출근거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 업무추진비 산출기초는 “이사장 판공비” 등으로 총액계상 불가
2. 사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및 임시직원의 급료와 수당 ○ 사무계 직원 여비와 직원 퇴직에 따르는 급여금 및 보험료 ○ 우편전화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난방용 연료비, 인쇄비, 운송비, 비품 기계기구집기 등 구입비, 각종 재료 및 용품류와 도서대, 수수료 및 수선비 ○ 차량비는 학교법인 소유로 등록된 업무용 차량에 한하여 계상
3. 재 산 조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건물매입비 또는 건물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공고료 포함) 등을 계상 ○ 학교법인 수익용재산이나 교육용재산의 시설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관할청에 증자 보고하여야 함 ○ 건물수선비와 화재보험료 및 기타 공과금
4. 전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비 전출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소속학교에 학교운영비로 전출하여야 함 ○ 법정부담경비 전출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 등)의 비용 중 제세공과금 및 학교법인 운영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은 법정부담경비로 전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부담금 - 재해보상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 교비회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계상 ○ 설치·경영학교가 병설인 경우에는 학교별로 구분하여 계상

구 분	편 성 기 준
5. 투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세입재원으로 주식, 국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는데 투자하는 경우나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수익용기본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즉시 당초 허가 조건에 따라 전액 대체재산 형성에 투자하여야 함 ○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여야 함
6. 전년도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에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비로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미지급 인건비, 수당 등에 한함
7. 상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장기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를 계상 ○ 일시차입금의 이자 지출금은 원금 및 상환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계상하되, 산출기초를 명기하여야 함
8. 수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에서 특별한 경우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9. 잡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상품대, 사례금, 소송비, 기타 제지출금을 계상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 ○ 공과금, 수수료를 제외한 법인연합회비 등 운영비는 법정부담금을 우선 전출한 후 운영비 한도 내에서 집행 할 것
10. 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며 전년도 예산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최소 금액을 계상 ○ 이사회에서 예산의결 시에 부결 또는 삭감한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음

[별지 제2호]

법인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설

○ 세 입

과목			과목해설
관	항	목	
1.재산수입			
	1.기본재산수입		
		1.대지료	○ 수익용기본재산 대지, 전, 답 및 잡종지에서 발생하는 수입 - 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수확물 매각대금
		2.대가료	○ 수익용기본재산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입 - 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3.임야수입	○ 수익용기본재산 임야에서 발생하는 수입 - 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수확물 매각대금
		4.예금이자수입	○ 수익용기본재산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
		5.법인세환급금 (법인분)	○ 법인세 환급금(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발생분) ※ 교비회계 법인세환급금은 잡수입에 계상
		6.기타수입	○ 수익용기본재산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
	2.재산매각수입		
		1.토지매각수입	○ 관할청 처분허가를 받은 토지 매각대
		2.건물매각수입	○ 관할청 처분허가를 받은 건물 매각대
		3.임야매각수입	○ 관할청 처분허가를 받은 임야 매각대
		4.기타재산매각수입	○ 관할청 처분허가를 받은 예금, 주식, 채권 등 매각대
2.사업수입			
	1.사업수입		
		1.○○사업	○ 법인의 수익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 계상 - 수익사업체별로 목을 설정하여 계상

과목			과목해설	
관	항	목		
3.투자수입			※ 유의사항: 수익용기본재산인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은 반드시 기본재산수입의 기타수입에 계상하도록 함	
	1.투자수입			
		1.배당금		○ 회사, 그 밖의 투자에 대한 배당금
		2.국채상환금		○ 국채의 원금 수입
		3.국채이자수입		○ 국채의 이자 수입
		4.기타증권수입	○ 그 밖의 유가증권 수입	
4.전년도수입				
	1.전년도수입			
		1.기본재산수입	○ 전년도 미수된 수입으로서 금년도 중 수입으로 확정된 금액을 계상하되, 산출기초에 명세를 작성	
		2.불용재산매각수입		
		3.사업수입		
		4.투자수입		
5.이월금				
	1.전년도이월금			
		1.전년도잉여금	○ 전년도 불용액 기재(순세계잉여금)	
		2.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여 이월한 사업비를 기재하고 이월사업비 조서를 첨부 ※ 이사회비, 사무비 등 법인운영비는 이월사업 대상이 아님	
6.기부원조금				
	1.기부원조금			
		1.기부금	○ 이사장 등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기부금 계상 ※ 유의사항 : 기부각서 등 제출, 집행용도 구체적 작성, 확실한 금액 계상 ※ 제출 산출기초 세부내역에 기부금 사용분은 반드시 “기부금 사용” 표시	

과목			과목해설
관	항	목	
		2.원조금	○ 국외 원조금
		3.보조금	○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가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계상
7.차입금			
		1.은행차입	○ 관할청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개인차입	○ 관할청 허가를 받은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
8.잡수입			
		1.물품매각수입	
		1.불용물품매각수입	○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닌 비품, 집기, 기계기구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2.예금이자	
		1.정기예금이자	○ 법인운영비 잉여자금 예치분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2.기타예금이자	○ 법인운영비 보통예금 이자
		3.잡수입	
		1.잡수입	○ 타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변상금, 위약금, 수수료 등의 수입예상액 ○ 법인운영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환급금
		2.법인환급금(학교분)	○ 학교분 법인세 환급금을 계상(학교별 구분)

○ 세 출

과목			과목해설
관	항	목	
1.이사회비			
	1.이사회비		
		1.임원수당	○ 이사회 운영에 따른 법인 임원의 교통비 및 일당 등 실비 변상
		2.회의비	○ 이사회의 다과비, 그 밖의 급식경비
		3.업무추진비	○ 경조사비 및 접객비 등 산출내역별로 계상 ※ 법인 설립자, 이사회 임원 묘소관리비 등 불가 ※ 산출기초 “이사장 판공비” 총액계상 불가
		4.여비	○ 임원의 법인사무 관련 여비
2.사무비			
	1.수용비		
		1.공공요금	○ 우편·전신·전화·전기·수도요금 등
		2.연료비	○ 난방용 연료와 그 부대경비(공고 및 운반비 포함)
		3.차량비	○ 법인에서 운용하는 차량의 세금, 수수료, 수리비 및 유류·부속품 구입비
		4.선박비	○ 선박운영 등에 드는 경비
		5.비품기계류비	○ 법인용 비품, 기계기구, 집기 등의 구입비
		6.수수료수선비	○ 각종 수수료, 비품기계류 등 수선비 - 법인회비 등은 잡지출로 계상 ○ 국유지, 공유지 등 타 기관(타인) 소유의 부지에 대한 사용료, 법인사무실 임대 사용료 등 계상
		7.수용재료비	○ 법인 운영을 위한 각종 재료비 및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8.인쇄비	○ 법인 홍보물 등 인쇄비
		9.운송비	○ 법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운송비 등 계상

과목			과목해설	
관	항	목		
3.재산조성비				
	1.시설비			
		1.재산매입비	○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매입비	
		2.시설비	○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신·증·개축비용 및 부대경비(공고료 포함)	
		3.기타시설비	○ 이전 제1목 및 제2목 외의 시설비 - 비품이나 고정시설물도 건축공사와 일괄 시공하는 시설비에서 지출 가능	
	2.재산관리비			
		1.재산유지비	○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수선·유지비용 - 산출기초에 교육용과 수익용 건물별 구분	
		2.공과보험료	○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화재보험료 등 재산관리에 관련되는 공과금	
4.전출금			※ 법정부담금 의무전출액 부족 법인은 다른 목적(목 4, 5, 7, 8)을 위한 전출금 편성 불가	
	1.전출금			
		1.연금부담금		○ 산출기초에 연금부담금을 학교별로 계상
		2.재해보상부담금		○ 산출기초에 재해보상부담금을 학교별로 계상
		3.건강보험부담금		○ 산출기초에 건강보험부담금을 학교별로 계상
		4.학교운영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한 학교운영비(경상운영비) 전출액을 학교별로 계상(인건비 지원금은 제외)
		5.시설비		○ 법인에서 학교 시설지원 내역 학교별로 계상
		6.법인세환급금(학교분)		○ 학교별 법인세 환급금 전출액 기재
		7.교육청 대응투자비		○ 교육청 대응투자비 법인분 전출내역 학교별로 계상
		8.기타전출금		○ 이전 제1목-제7목 이외의 전출금을 전출목적에 따라 학교별로 작성

과목			과목해설
관	항	목	
5.투자비			
	1.투자비		
		1.주식매입비	○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주식, 채권 등 매입비 또는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투자비(세부 내역별로 구체적 기입)
		2.국채매입비	○ 국·공채 매입비
		3.기타투자비	○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여 현금, 기타 투자비 또는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투자비(세부 내역별로 구체적 기입)
6.전년도지출			
	1.전년도지출		
		1.전년도지출	○ 전년도에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비로서, 금년도에 지출할 경비 계상 ○ 전년도 미지급 인건비, 수당 등에 한함
7.상환금			
	1.부채상환금		
		1.원금상환금	○ 관할청의 사전허가를 받은 차입금의 원금상환금
		2.이자지출금	○ 관할청의 사전허가를 받은 차입금의 이자 지출금
8.수혜금			
	1.장학금		
		1.장학금	○ 법인에서 특별한 경우에 지급하는 장학금
9.잡지출			
	1.제지출		

과목			과목해설
관	항	목	
		1.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나 판결 등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상금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 ○ 각종 상품 대금
		2.사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임직원 및 외부인사 격려 등 위로 비용
		3.소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관련 비용(수수료, 변호사비용 등)
		4.기타제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법인운영 시 필요한 제비용 - 교직원 채용관련 비용, 법인회비, 소모성 경비 등
10.예비비			
	1.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 계상

※ 비고

1.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실제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목의 증설은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
3. 결산의 경우에는 예산에 책정된 관·항·목에 따른다.

※ 교육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보상금 등은 반드시 교비회계로 편성
 [“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 법령 해석 알림” (예산과-11211, 2015.11.4.) 참고]

[별지 제3호]

법인회계 예·결산 관련 각종 서식

구분	서식 번호	예산관련 서식	공시	서식 번호	결산관련 서식	공시
필수	1	예산서 표지	○	14	결산서 표지	○
	2	예산총칙	○	15	세입·세출결산총괄표	○
	3	세입·세출예산총괄표	○	16	세입·세출결산(명세서)	○
	4	세입·세출예산(명세서)	○	17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실적조서	
	5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예정조서		26	감사보고서	○
	6	기구와 정원 일람표		13	이사회 회의록 사본	○
	13	이사회 회의록 사본	○	27	예금잔액 증명서	
해당시	7	전년도 부채명세서		18	세입금 결손 처분액 명세서	
	8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직원 명단		19	지난 연도 수입금 미수입액 명세서	
	9	직원 보수 일람표		20	차입금 명세서	
	10	지난 연도 미수액 조서		21	예비비 사용 명세서	○
	11	기부금 각서		22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
	12	이월사업비 조서	○	23	명시이월 명세서	○
				24	사고이월 명세서	○
				25	직원 인건비 지급 명세서	
			28	예금잔액 불부합 명세서		
구분	서식 번호	기타 서식				
해당시	29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비용 사용 승인 신청서(법인 공문 첨부할 것)				
참고	30	법인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확인사항				

※ 법인회계 예·결산 공시 부속서류는 위 표 공시 구분에 “○” 표시된 서류로 함

[서식1]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추경예산인 경우

2022회계연도 제○회 법인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세 _____ 입

일금: 천원

세 _____ 출

일금: 천원

학교법인 ○○학원

(설치경영학교 : ○○중, ○○고, . . .)

[서식2]

【 예 시 】

예 산 총 칙

제1조 20○○회계연도 학교법인 ○○학원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원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상세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와 같다.

제2조 2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3조 20○○회계연도중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원으로 한다.

(차입금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금액에 한함)

※ 기타 예산의 원칙 등을 규정할 것

제4조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액의 부족액이 있을 경우 “목”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5조 ①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지원금, 목적지정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동일 회계연도 내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 기재 상의 유의사항

1. 차입금 예산액이 없으면 제3조의 내용은 삭제
2.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총칙의 내용 중 변동된 부분만 개정한다.

2022회계연도 학교법인 ○○학원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입·세출 각각 ○○원” 을 “세입·세출 각각 ○○원” 으로 한다.

제2조 중 2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 명세서” 와 같다.

[서식3]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 총괄표

(금액 : 천원)

세 입					세 출				
관 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비 (%)	관 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비 (%)
1. 재산수입					1. 이사회비				
2. 사업수입					2. 사 무 비				
3. 투자수입					3. 재 산 조 성 비				
4. 전 년 도 수 입					4. 전 출 금				
5. 이 월 금					5. 투 자 비				
6. 기 부 원 조 금					6. 전 년 도 지 출				
7. 차 입 금					7. 상 환 금				
8. 잡 수 입					8. 수 혜 금				
					9. 잡 지 출				
					10. 예 비 비				
세입합계					세출합계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 구성비는 예산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산출

[서식4]

세입·세출 예산서

○ 세 입

(금액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단위:원)
관	항 목				
1. 재산수입					
(예 시)					
1. 기본재산수입		47,400	46,880	520	47,400,000
	1. 대지료 (토지임대수입)	1,200	1,000	200	1. 전주시 △△동 54-3 330.58㎡ 대지 임대료 ○ 100,000원×12월 = 1,200,000원 ※ 전·답 및 잡종지의 임대수입도 같은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2. 대가료 (건물임대수입)	31,200	35,000	△3,800	1. 전주시 △△동 54-2 ○○빌딩 임대수입 30,000,000원 ○ 1층 1호 300,000원×12월 = 18,000,000원 ○ 1층 2호 100,000원×12월 = 12,000,000원 2. 전주시 △△동 54-2 ○○빌딩 임대보증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 1층 10,000,000원 × 0.12 = 1,200,000원
	3. 임야수입	10,000	10,000	0	1. 순창군 구림면 ○○리 산12-1 33,058㎡ 생산물매각대 ○ 밤 10,000원 × 1,000Kg = 10,000,000원
	4. 예금이자수입	4,000	0	4,000	1.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이자수입 ○ 1억원×0.04 = 4,000,000원
	5. 법인세환급금 (법인분)	800	700	100	1. 2021년도 법인세환급금 ○ 법인세 환급금 = 800,000원 ※ 법인세 환급금(법인분만 계상) 학교분에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은 잡수입에 계상
	6. 기타수입	200	180	20	1. (주)○○ 주식배당금 ○ 1,000원×200주 = 200,000원
2. 재산매각수입					
	1. 토 지 매각수입	55,000	0	55,000	1. 수익용기본재산 매각대금 ○ 전주시 △△동 54-9 대지 매각대금 ○ 500,000원×110㎡= 55,000,000원

○ 세 입

(금액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단위:원)
관	항 목				
	2. 건 물 매각수입	15,300	0	15,300	1. 수익용기본재산 매각대금 ○ 전주시 △△동 54-8 ○○빌딩 매각대금 $100,000\text{원} \times 153\text{m}^2 = 15,300,000\text{원}$
	3. 임 야 매각수입	45,000	0	45,000	1. 수익용기본재산 매각대금 ○ 순창군 구림면 ○○리 산15 매각대금 $5,000\text{원} \times 9,000\text{m}^2 = 45,000,000\text{원}$
	4. 기타재산 매각수입	500	0	500	1. 임목죽 매각대금 ○ 전주시 △△동 54-2 소재 10년생 향나무 매각대금 $100,000\text{원} \times 5\text{그루} = 500,000\text{원}$
2. 사업수입					
	1. 사업수입	60,000			
	1. ○○병원 사업수입 ※ 실지에 의한 목을 삭제	60,000			1. 서울 ○○구 ○○동 14-8 소재 ○○병원사업 수입 ○ $5,0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60,000,000\text{원}$
3. 투자수입					
	1. 투자수입				
	1. 배당금				1. (주)□□ 주식배당금 ○ $1,000\text{원} \times 200\text{주} = 200,000\text{원}$
	2. 국 채 상환금				1. ○○채권 상환에 따른 원금 수입 ○ $5,000\text{원} \times 200\text{주} = 1,000,000\text{원}$
	3. 국 채 이자수입				1. ○○채권 이자 수입 ○ $100,000\text{원} \times 0.3 \times 10\text{매} = 300,000\text{원}$
	4. 기 타 증권수입				1. ○○증권 원금 및 매각수익금 $1,100,000\text{원}$ ○ 원금: $10,000\text{원} \times 100\text{주} = 1,000,000\text{원}$ ○ 수익금: $1,000\text{원} \times 100\text{주} = 100,000\text{원}$
4. 전년도수입					

○ 세 입

(금액 : 천원)

관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단위:원)
	항	목				
	1. 전년도수입					
		1. 기본재산 수 입				1. 2021회계연도 임대료 미수납분(전주시 △△동 54-2 ○○빌딩 302호) 12~2월분 ○ 300,000원 × 3월 = 900,000원
		2. 불용재산 매각수입				※ 각 목별 과년도수입을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기술
		3. 사업수입				
		4. 투자수입				
	5. 이 월 금					
	1.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 잉여금				1. 2021학년도 집행잔액 100,000원 ○ 이사회비 50,000원 ○ 잡 지 출 50,000원 ※ 2021학년도 집행잔액을 각 목별로세 부적으로 기술
		2. 이 월 사업비				1. ○○건물 신축공사 이월에 따른 공사비 미집행분 5,000,000원
	6. 기부원조금					
	1. 기부원조금					
		1. 기부금				1. 이사장 기부금 10,000,000원 ○ 중학교 강당신축 기부 10,000,000원 ※ 목적기부금인 경우에는 용도 명시 ※ 유의사항 : 기부각서 등 제출, 집행 용도 구체적 작성, 확실한 금액 계상 ※ 세출 산출기초 세부내역에 기부금 사용분은 반드시 “기부금 사용” 표시
		2. 원조금				국외원조금
		3. 보조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7 차입금					
	1. 차입금					
		1. 은행차입				1. 전주시 ☆☆은행 장기차입

○ 세 입

(금액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단위:원)
관	항 목				
					○ ○ ○ 중학교 신축부지 매입자금 전주시 ○ ○ 동 192번지의 10필지 1,000㎡ × 500,000원 = 500,000,000원
	2. 개인차입				
8. 잡수입					
	1. 물품매각수입				
	1. 불용물품 매각수입				1. 불용물품 매각수입 ○ 컴퓨터 : 100,000원 × 2대 = 200,000원
	2. 예금이자				
	1. 정기예금이자				1. 법인관리운영비 정기예금이자 ○ 500,000원 × 0.012 × 3월 = 18,000원 ※ 기본채산을 제외한 법인비의 분기마다의 잉여자금 예치분에 대하여 계상
	2. 신탁예금이자				※ 1목의 정기예금이자와 같은 형식으로 기술
	3. 통지예금이자				
	4. 기타예금이자				1. 상반기 보통예금이자 50,000원 2. 하반기 보통예금이자 50,000원
	3. 잡수입				
	1. 잡수입				1. 전주시 △△동 54-3 소재 ○ 은행나무잎 매각대금 50,000원 2. 법인운영비 통장 법인세환급금 20,000원
	2. 법인세환급금 (학교분)				1. ○ ○ 중학교 법인세환급금 30,000원 2. ○ ○ 고등학교 법인세환급금 50,000원
	3. 변상비				1. 노트북 망실 변상비 ○ 150,000원 × 1대 = 150,000원
	4. 위약금				1. ○ ○ 중학교 건물 및 토지매각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입 50,000,000원
합 계					

※ 목의 증설폐지는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과목존치(예산액 1천원 미만)는 반드시 지양

※ 교육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보상금 등은 반드시 교비회계로 편성

○ 세 출

(금액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단위:원)
관	항 목				
1. 이사회비					
(예 시)					
	1. 이사회비				
	1. 임원수당				1. 이사회 참석수당(여비 포함) ○ 30,000원×6명×5회 = 900,000원
	2. 회의비				1. 이사회 개최에 따른 식비 ○ 10,000원 × 5회 = 50,000원
	3. 업무추진비				1. 경조사비 ○ 50,000원 × 3회 = 150,000원
	4. 여비				1. 이사의 법인사무 여비 ○ 20,000원 × 3회 = 60,000원
2. 사무비					
	1. 수용비				
	1. 공공요금	430			1. 법인 사무실 전화요금 ○ 30,000원 × 12월 = 360,000원 2. 이사회 안전 발송 우편요금 ○ 10,000원 × 7회 = 70,000원
	2. 연료비	188			1. 법인 사무실 난방용 석유 구입비 ○ 936원 × 200ℓ = 187,200원
	3. 차량비				1. 법인 업무용 승용차 유류비 ○ 1,510원 × 1,000ℓ = 1,510,000원
	4. 선박비				※ 선박운영 일체
	5. 비품기계류비				1. 법인 사무실 컴퓨터 구입 ○ 1,500,000원 × 1대 = 1,500,000원
	6. 수수료수선비				1. 법인 정관변경 등기 수수료 ○ 150,000원 × 2회 = 300,000원 2. 국·공유재산 임대료 ○ 200,000원 × 1회 = 200,000원
	7. 수용재료비				1. 법인회계 현금출납부 구입 ○ 10,000원 × 2종 = 20,000원 1. 복사용지 구입 ○ 20,000원 × 10상자 = 200,000원
	8. 인쇄비				1. 법인 홍보책자 인쇄 ○ 1,000원 × 100부 = 100,000원
	9. 운송비				1. 법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운송비 ○ 30,000원 × 2대 = 60,000원
3. 재산조성비					
	1. 시설비				

○ 세 출

(금액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단위:원)
관	항 목				
	1. 재산매입비				1. (교육용)○○중학교 신축부지 매입비 (전주시 △△동 54-3외 3필지) ○ 500,000원×5,000㎡=2,500,000,000원
	2. 시설비				1. (교육용)○○중학교 신축 공사비 ○ 본관 400,000원 × 3,000㎡ = 1,200,000,000원
	3. 기타시설비				1. (수익용)전주시 △△동 18-5 ○○ 건물 하수시설비 ○ 300,000원×10m = 3,000,000원
	2. 재산관리비				
	1. 재산유지비				1. (수익용)전주시 △△동 18-5 ○○ 건물 계단수리비 ○ 200,000원×10m = 2,000,000원
	2. 공과보험료				1. 수익용기본재산 재산세 ○ 전주시 △△동 18-5 ○○ 건물 1,000,000원 2. 20○○년도 법인세 200,000원
	4. 전출금				
	1. 전출금				※ 전출 목적에 따라 학교별로 기입
	1. 연금부담금				1. ○○고등학교 : 1,000,000원 2. ○○중학교 : 500,000원
	2. 재해보상부담금				1. ○○고등학교 : 1,000,000원 2. ○○중학교 : 500,000원
	3. 건강보험부담금				1. ○○고등학교 : 10,000,000원 2. ○○중학교 : 5,000,000원
	4. 학교운영비				1. ○○고등학교 : 2,000,000원(기부금)
	5. 시설비				1. ○○고등학교 강당수리비 20,000,000원
	6. 법인세환급금				1. ○○고등학교 : 400,000원 2. ○○중학교 : 100,000원
	7. 교육청대응투자비				
	8. 기타전출금				
	5. 투자비				
	1. 투자비				※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투자비
	1. 주식매입비				1. ☆☆은행 주식매입비 ○ 10,000원 × 100주 = 1,000,000원
	2. 국채매입비				※1목의 주식매입비와 같은 형식 으로 기술

○ 세 출

(금액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단위:원)
관	항 목				
	3. 기타투자비				1. 현금자산 정기예금 예치 ○ 50,000,000원 (○○은행 3년만기, 연이율○.○ %)
6. 전년도지출					
	1. 전년도지출				
	1. 전년도지출				※ 전년도 미지급 인건비, 수당 등에 한함
7. 상환금					
	1. 부채상환금				
	1. 원금상환금				1. ☆☆은행 장기차입 원금상환 ○○○중학교 신축부지 매입자금 500,000,000원
	2. 이자지출금				1. ☆☆은행 장기차입금 이자지출금 ○○○중학교 신축부지 매입자금 500,000,000원×0.04(이율) = 20,000,000원
8. 수혜금					
	1. 장학금				
	1. 장학금				1. ○○고등학교 졸업식 이사장 장학금 ○ 200,000원 × 10명 = 2,000,000원
9. 잡지출					
	1. 제지출				
	1. 보상금				1. ○○중학교 졸업식 이사장 시상품 ○ 국어사전 10,000원 × 10권 = 100,000원
	2. 사례금				
	3. 소송비				1. ○○사건 변호사 선임료 1,000,000원
	4. 기타제지출				1. ○○고등학교 교원 채용 비용 ○ 법인간공동전형분담금 (산출식 기재) ○ 2차 전형위원 수당 (산출식 기재)
10. 예비비					
	1. 예비비				
합 계					

※ 목의 증설은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과목존치(예산액 1천원 미만)는 반드시 지양

※ 예비비는 가급적 편성을 지양할 것

[서식5]

2022학년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예정조서

1. 총괄

(단위 : 천원)

2022학년도 수입예정액					2021학년도 수입액					증(△) 감				
토지	건물	현금	기타	계	토지	건물	현금	기타	계	토지	건물	현금	기타	계

2. 세부내역 (※ 수익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수익용기본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가. 토지(대지·임야·전·답) 및 건물

(단위 : 천원)

종류	소재지	경작방법	지적(m ²)	평가액	수익액	수익율
대지		자경				
임야		임대				
		...				
	계					

※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은 계약서 사본 제출

나. 건물

(단위 : 천원)

소재지	구분	사용용도	연건평(m ²)	평가액	수익액	수익율
	공장	임대				
	상가					
	...					
	계					

※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은 계약서 사본 제출

다. 현금 및 유가증권

(단위 : 천원)

재산 종류	예치기간	금 액	이율 또는 배당금	총수입액	예치기관	비 고
예금						
증권						
...						
계						

※ 통장 사본 제출

3. 수익사업체

(단위 : 천원)

사업체	총수익	제경비	순이익	수익전출금	비고
계					

※ 증빙서류 제출

[서식6]

기구와 정원 일람표

구 분	행정직군						관리운영(기술)직군					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소계		
법 인	정 원												
	현 원												
○○ 학교	정 원												
	현 원												

※ 학교별로 난을 증설하여 기재한다.

[서식7]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 상환내역)

(금액 : 천원)

종류	전전년도 이월액 (2020년)(A)	전년도 발생액 (2021년)(B)	전년도 상환액 (2021년)(C)	부채잔액 (2022.2.28.) (A+B-C)	부채발생 사유	상환계획
계						

※ 전년도 부채발생시 차입일자, 차입처, 차입이율, 차입목적, 감독청의 허가일자, 차입조건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관할청의 허가문서번호 및 일시 등 기재 가능)

[서식8]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직원 명단

(작성기준: 2022.3.1.)

성명	직급	담당업무	임용일자	급여(연간)	비고 (호봉수)

※ 수익사업회계 직원 명단 포함 작성

[서식9]

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기준 : 2022.3.1.

(단위 : 천원)

직	성명	호봉	봉 급	정근수당	○○수당	○○수당	계
계 :		명					

※ 연간 지급액을 종류별로 기재하고, 수당란은 증설할 수 있다.

[서식10]

지난 연도 미수액 조서

(금액 : 천원)

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입액 (C)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미수내역 및 사유 (산출기초 포함)
관	항	목						
합 계								

※ 예산액 : 2021회계연도 예산액 기재

수입액 : 2021회계연도 결산예정액 기재

결손액 : 수입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나, 법령의 통지나 시효의 완성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

미수납액의 계 : 당해연도 예산명세서의 전년도수입과 일치하여야 함

[서식12]

이월사업비 조서

(금액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A)	전년도 지출액 (B)	지출잔액 (A)-(B)	이월액	이월사유
관	항	목						
합 계								

- ※ 전년도 결산에서 특정사업을 정하여 이월한 내역 작성
- ※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반드시 편성
- ※ 시설비 등 특정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월
- ※ 기부금이 채원일 경우 “기부금” 표시, 예시) “○○시설공사비(○○기부금)”
- ※ 이사회비, 사무비 등 법인운영비는 이월 불가
- ※ 이월액의 계 : 세입의 이월사업비와 일치

학교법인 ○○학원

○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인	재적이사	인
감사정수	인	재적감사	인

1. 회의소집통지일 : 20○○년 00월 00일 (※ 등기우편물 수령증 첨부)
2. 회의일시 : 20○○년 00월 00일 (00 : 00 ~ 00 : 00)
- 회의일자 - 통보일자 ≥ 8일, 반드시 확인할 것
3. 회의장소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실 (구체적으로 기재)
4. 이사정수 : 00명
5. 재적이사 : 00명
6. 참 석 자 : 이사 : 000, 000, 000, 000, 000, 000 (이상 0명)
감사 : 000, 000 (감사 2인-결산이사회에서는 감사가 필히 참석하여 감사보고
(그 외의 참가자가 있을 시 참가자의 직명과 성명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7. 결석이사 : 이사 000 (결석 이사가 없을 시 “없음” 이라 기재한다.)
8. 회의안건
 - 1) 2022학년도 법인회계 예산(안)
 - 2)
9. 의결사항
 - 1)
 - 2)

10. 회의 진행 내용

- 안건별로 제안설명, 질문, 토의, 동의, 제청, 표결, 가결, 선포 등의 과정과 내용을 기술
(반드시 전자 회의록 낭독 및 통과절차를 밟을 것)
- 특히 예결산 토의과정 및 선포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예결산 총액을 반드시 표기

(폐회 : 0000년 00월 00일 00:00)

작성자: 행정6급 0 0 0 , 자필서명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0 0 0 , 자필서명

이 사 0 0 0 , 자필서명

※ 회의록 작성시 유의사항

1. 서명 및 간서명

- 회의록 쪽수가 2장 이상인 경우 참석임원(3인)의 간서명이 필요하며, 참석이사의 자필 서명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제2항에 의거 출석임원 전원이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2.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사립학교법」 제18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에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3. 이사회 회의록은 원본대조자의 직·성명을 기재·서명하여 사본 제출

20○○회계연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
일금: 원

세출
일금: 원

세입·세출 차인 금액
일금: 원

<차인자액 세부내역>

- 순세계잉여금: 금 원
- 다음연도이월액: 금 원
※이월사업비 조서 필수 제출

학교법인 ○○학원
(설치경영학교 : ○○중, ○○고, . . .)

[서식15]

20〇〇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총괄표

(금액 : 천원)

세 입					세 출				
관 별	결산액 (A)	최종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비 (%)	관 별	결산액 (A')	최종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비 (%)
1. 재산수입					1. 이사회비				
2. 사업수입					2. 사 무 비				
3. 투자수입					3. 재 산 조 성 비				
4. 전 년 도 수 입					4. 전 출 금				
5. 이 월 금					5. 투 자 비				
6. 기 부 원 조 금					6. 전 년 도 지 출				
7. 차 입 금					7. 상 환 금				
8. 잡 수 입					8. 수 혜 금				
					9. 잡 지 출				
					10. 예 비 비				
세입합계					세출합계				

[서식17]

20〇〇학년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실적조서

1. 총괄

(단위 : 천원)

2022학년도 수입액					2021학년도 수입액					증 (△) 감				
토지	건물	현금	기타	계	토지	건물	현금	기타	계	토지	건물	현금	기타	계

2. 세부내역 (※ 수익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수익용기본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가. 토지(대지·임야·전·답) 및 건물

(단위 : 원)

종류	소재지	경작방법	지적(㎡)	평가액	임차인	임대기간	수익액	수익율
대지		미임대			없음		0	
대지		임대			이순신	2021.3.1.~2022.2.28.		
임야		임대			홍길동	2021.3.1.~2021.10.31.		
					이몽룡	2021.11.1.~2022.2.28.		
	계							

※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은 계약서 사본 제출, 수익액은 회계연도 내의 수입만 기재

나. 건물

(단위 : 원)

소재지	구분	연건평(m ²)	평가액	사용용도	임차인	임대기간	수익액	수익율
	공장				없음		0	
	주택			주택	이순신	2021.3.1.~2022.2.28.		
	상가			학원	홍길동	2021.3.1.~2021.10.31.		
				부동산	이몽룡	2021.11.1.~2022.2.28.		
계								

※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은 계약서 사본 제출, 수익액은 회계연도 내의 수입만 기재

다. 현금 및 유가증권

(단위 : 원)

재산 종류	예치기관	예치기간	계좌번호	예치금액	이율 또는 배당금	총수입액	비 고
예금	농협	2019.9.1.~2021.8.31.		10,000,000			만기수령액
예금	농협	2021.9.1.~2022.8.31.		10,000,000			월수령액
증권							
...							
계							

※ 통장 사본 제출

3. 수익사업체

(단위 : 원)

사업체명	사업체 주소	총수익	제경비	순이익	수익전출금	비고
계						

※ 증빙서류 제출

[서식18]

세입금 결손 처분액 명세서

(금액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입 액	결손처분액	결손처분내역 및 사유
관	항	목					
합		계					

[서식19]

지난 연도 수입금 미수입액 명세서

(금액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입 액	미수입액	산 출 기 초
관	항	목					
합		계					

※ 작성요령 : 산출기초는 미수입액을 단가×금액 = ○○원으로 기재한다.

[서식22]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금액단위 : 원)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전)용액		이(전)용 사유
관	항	목			증	감(△)	

☞ 세출예산 이(전용)조서 작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할 것.

[서식23]

명시이월 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불용액	사 유
관	항	목		①	②	③	④	①-②-④	

※ 이월액의 합계(명시+사고+순세계잉여금) = 결산서 표지의 “잔액” + 세입결산의 “비교증감액”

[서식24]

사고이월 명세서

(금액단위 : 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불용액	사 유
관	항	목		①	②	③	(②-③)	④	①-③-④	

※ 이월액의 합계(명시+사고+순세계잉여금) = 결산서 표지의 “잔액” + 세입결산의 “비교증감액”

[서식25]

직원 인건비 지급 명세서

(단위 : 원)

구분	직	성명	호봉	연간지급액				
				봉 급	○○수당	○○수당	○○수당	계
법인일반								
회계								
수익사업								
회계								
계 : 명								

※ 연간 지급액을 종류별로 기재하고, 수당란은 증설할 수 있다.

[서식26] (예시)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학원의 20○○회계연도 (20 . 3. 1 ~ 20 . 2. 28)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각항은 (다음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도 적정하였습니다.

지적사항 :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20 년 월 일

학교법인 ○○○ 학원

감 사 : ○○○ (서명)

감 사 : ○○○ (서명)

피감사자(입회인) 소 속 : 학교법인 ○○학원 직 : 법인과장 성 명 : ○○○ (서명)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1. 반드시 감사가 자필 서명할 것
2.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감사” 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식28]

예금잔액 불부합 명세서

1. 불부합 내용

(단위 : 원)

결 산 잔 액 (1)	금융회사 잔액 (2)	차액 (1)-(2)	비 고

☞ 잔액 예탁증명서 발행 기준일 : 2000.2.28. ~ 3.20. 기간 중 2000회계년도 회계 마감일

2. 사 유(결산잔액과 금융회사 잔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

20 년 월 일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학교법인 ○○학원 이 사 장 ○ ○ ○ (직인.사인)

학교법인 ○○학원 법인과장 ○ ○ ○ (사인)

※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고 증빙자료를 첨부(차액이 있는 법인(학교)에서만 제출)

[서식29]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비용 사용 승인 신청서

1. 일반현황

법인명	이사장	설치·경영학교 현황				담당자	연락처	비고
		학교명	교장	학급수	학생수			

2.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평가액	수익액	수익율	비고
토 지				
건 물				
현 금				
주식 등				
계				

나. 토 지

(단위 : 천원)

순	소재지	지목 (사용용도)	면적(m ²)	평가액	수익액	수익율	비고
계							

다. 건 물

(단위 : 천원)

순	소재지	구조 (사용용도)	면적(m ²)	평가액	수익액	수익율	비고
계							

라. 현금

(단위 : 천원)

순	계좌번호 (예금기관)	예금주	예금기간	예금액	수익액	이자율	비고
계							

마. 주식, 채권 등

(단위 : 천원)

순	구분	발행기관	발행번호	보유수량	평가금액	수익액	수익율	비고
계								

※ 구분에는 주식, 채권(광업권, 어업권 등)으로 기재

3. 수익비용 사용승인 신청 사항

가. 신청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사용용도	면적(m ²)	건물수입	수익비용 사용한도액	건물수선 필요비용	비고
건물							

※ 수익비용 사용한도액은 해당 건물 수입의 20%

나. 신청사유 : 건물 노후에 따른 재 임대수익 창출을 위한 소수선

다. 수선기간 : 승인 후 1개월 이내

라. 기대효과 :

- 붙임 1. 견적서 1부.
2. 건물현황사진 1부. 끝.

※ 유의사항 : 신청 시 법인 공문을 첨부하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서식30]

법인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확인여부
본 예산	• 교육청 기본지침을 포함한 법인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요령을 결정하여 시달하였는가?	
	• 사학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과목 및 산출 기초를 준수하여 편성하였는가?	
	• 법정부담경비 전출금 편성은 적정한가?	
	• 이사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소집 기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 예산안의 이사회 의결 기일은 준수하였는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2000.2.18.까지)	
	• 이사회 회의록에 예산총액을 명기하였는가?	
	• 확정된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예산서를 부속명세서를 포함하여 당해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2000.2.23.까지)	
추가경정 예산	• 본예산 세입예산에 이월금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과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을 반영하였는가?	
	• 이사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소집 기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 이사회 회의록에 예산총액을 명기하였는가?	
	• 추가경정 예산서를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결산	• 최종 추경예산서의 세입·세출내역부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였는가?	
	• 결산서의 감사 실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은 적정한가?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2000.4.9.까지)	
	• 이사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소집 기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 이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확정하였는가? (2000.4.24.까지)	
	• 이사회 회의록에 결산총액을 명기하였는가?	
	• 확정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고,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당해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2000.5.31.까지)	

1. 수익사업체

- 학교법인 정관에 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에 따라 관할청에 공고 내용을 보고하고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행한 사업을 의미하며, 별도 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2. 여러 개의 수익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는 사업체별로 예·결산서를 작성한다.

3. 수익사업회계 예·결산은 사립학교법 및 관련법규에 의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반업무회계의 예·결산 절차 준용)

4. 수익사업체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일반회계(사업수입)로 전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회계 운영 시 ① 법인일반회계와 인건비 중복지급 여부, ② 인건비 지급 대상의 타당성, ③ 판매관리비 등 운영비용의 적정성, ④ 각종 비용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수익액 누수부분 발생 여부, ⑤ 수익금 전출 비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5.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또는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예금, 증권 구입 등의 투자비는 수익사업체로 보지 아니한다.

6. 수익사업회계 예·결산서 제출

- 수익사업체 예산 제출서류
 - 단식부기 형식으로 작성한 세입·세출예산명세서
 - 2021. 5월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 수익사업체 결산 제출서류
 - 단식부기 형식으로 작성한 세입·세출결산명세서
 - 2022. 5월에 제출할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7. 수익사업회계 수입·지출과목구조 및 예산과목(참고)

구 분	과 목	예 산 과 목
수 입	영업수익	매출, 직송품매출, 할부매출, 내부매출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수입할인·임대료, 유가증권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 처분·평가 이익, 원가차익, 매입할인, 잡이익
	특별이익	고정자산 처분이익,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법인세환급액, 대손충당금 환입액, 기타특별이익
지 출	매출원가	가. 재료비 : 중요재료비, 부분품비, 보조재료비 나. 노무비 : 임금, 급료, 잡급, 종업원상여배당 다. 경 비 : 전력·가스·수도료,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운임, 여비 교통비, 감가상각비, 지급임대료, 소모품비, 수선비, 후생비, 통신비, 잡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임원급여, 급료와임금, 제수당, 퇴직급여, 복지후생비, 여비, 통신비, 수도요금, 광열비, 세금 및 공과금, 지급임대료, 감가상각비, 수선비, 접대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보관료, 창고료, 견본비, 포장비, 기술개발비, 운반비, 판매수수료, 대손상각, 잡비
	영업외비용	지급이자할인료, 사채이자, 이연자산의 상각, 기타대손상각, 유가증권평가손실, 원가차익, 매출할인,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부금, 잡손실
	특별손실	고정자산 처분손실,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법인세 추가납부액, 재해손실, 기타의 충당금 전입액
	전 출 금	일반업무회계의 사업수입에 편성할 전출금
	예 비 비	

연번	지 적 사 항	업 무 처 리 요 령
1	예·결산 이사회 확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 작성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에 의거 회계연도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결산은 같은 규칙 제23조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 까지 심의·확정하여야 함. ○ 결산시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40일 이내에 작성 하여 감사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예·결산서 보고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에 이사장이 관 할청에 제출하도록 하며,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
3	예·결산서 부속서류 작성 오류 및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제1항, 제23조 제4 항 및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등에 의거 각종 부속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토록 하며, 특히 예산총칙, 예(결)산총괄표, 예(결)산명세서, 이사회(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세입·세출 예(결)산 금액을 잘못(누락) 작성 하거나 계수가 틀리게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산출기초 명확히 작성(재산수입, 기부금, 전출금 등) - 수익용기본재산 임대시 관련 계약서 사본 제출
4	법인 세입 및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기준을 준용 하지 않고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서 정한 “법인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기준과 예산과목 및 산출기초” 등을 숙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5	교비회계 예산서 검토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에서는 법인회계의 전출금과 교비회계의 전입금이 같아야 하며, 법인세 환급금 등이 교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6	법인운영비 과다지출로 법정부담경비 미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 등)의 비용 중 제세공과금과 학교 법인운영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은 법정부담경비 로 전출해야 함

연번	지 적 사 항	업 무 처 리 요 령
7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므로 세출과목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세입예산은 연간 예상되는 수입의 규모와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부득이한 경우 세입재원의 변동시 정확한 산정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 수입이 없으면서도 과목존치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실제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예산(가공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 조치 할 것
8	법인재정운영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예·결산서는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1년간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예산서 공개 :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부터 - 결산서 공개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부터
9	결산이월금 과다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므로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 과다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
10	감사 임원의 직무이행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14조에 의거 임원인 감사는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유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미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와 감독청 보고 의무 등
11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제고 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기준에 맞게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설치·경영학교의 법정부담금 및 학교운영을 위한 경비를 전출하여야 함 - 비수익형 재산을 수익형 재산으로 전환하거나 현금을 보다 고금리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함

이면 간지